Ⅳ. 공익신탁 재산의 증여세 과세제외 (법 제52조)

① 신탁법 규정상의 공익신탁을 통한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제외

증여재산 중에서 증여자가 신탁법상의 공익신탁으로서 종교·자선·학술·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본 조 규정은 본 법 제17조의 위임 준용을 통하여 규정하고 있다.

② 공익신탁의 범위

여기서 공익신탁이란 공익신탁수익자가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것, 공익신탁 만기일까지 중도해지 안되는 것, 공익신탁의 중도해지나 종료시 나머지 신탁 재산이 국가 등에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

Ⅴ. 장애인 수증재산의 과세제외 (법 제52조의2)

① 장애인이 수증한 신탁재산은 증여세 과세예외 (제1항)

장애인이 수증받은 재산이 증여세 과세금액에 불산입되어 과세되지 않을 최소 공통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법령상 장애인(심신·정신·청각·시각 등)이 수증받는 재산이어야 함.
② 장애인의 직계존비속이나 기타 친족(부계 6촌, 모계 4촌, 처계 2촌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
③ 신탁회사의 신탁가능자산으로 수증재산이 모두 신탁회사에 신탁되어야 함.
④ 수증재산은 5억원까지만 과세제외함.
⑤ 장애인이 신탁이익의 전부를 수익하며, 신탁기간은 사망할 때까지만 이어야 함.
⑥ 수증자인 장애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가액 불산입신청해야 함.

② 수증자는 장애인, 증여자는 직계존비속 및 친족

증여과세가액 불산입되려면 수증자는 소득세법상의 장애인이며, 증여자는 당해 장애인에 대해 직계존비속관계나 국세기본법상의 친족 등 관계에 있어야 한다.

③ 수증재산은 신탁가능 신탁재산

금전·유가증권·부동산 등 신탁회사가 신탁가능한 재산이어야 한다. 이러한 재산은 장애인이 수증받은 후 혹은 수증받으면서 전액 신탁회사에 신탁되어야 하며, 당 장애인이 신탁이익의 전부를 수익받아야 하며, 신탁기간은 당해 장애인의 사망시까지이어야 한다. 사망전 신탁만기시는 연장되어야 하는데 신탁해지일·만료일부터 1개월내 동일종류 신탁가입하면 연장된 것으로 된다.

④ 장애인의 수증재산 신탁요건 위배시 해당일에 증여세 부과

장애인의 수증신탁재산에 대해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지만, 신탁중도해지, 만료후 연장 안하거나, 신탁기간중 수익자 변경, 재산가액 감소, 신탁이익 일부가 장애인외의 자에게 귀속 등이 확인되면 해지일·만료일·변경일·인출일·처분일·타인귀속확인일 등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가산세 등은 없다.

⑤ 신탁재산의 부득이한 변동시 과세 안함

신탁재산 감액, 중도해지 등이나 타수익자 사용시 증여세 과세하지만, 신탁회사의 영업정지·폐쇄·허가취소·신탁회사의 신탁운영에 따른 재산가액 감소 등은 부득이한 경우라 보아 증여세 과세를 하지 않는다.

⑥ 장애인의 신탁재산 요건 위배시 과세할 증여세 계산 (제4항)

◎ 증여세 부과일 : 신탁해지일, 신탁기간 만료일, 수익자 변경일, 인출일, 처분일

◎ 부과될 증여세 : 부과일 현재 신탁재산의 법정평가액×일반증여세율×100% (수익자 변경) 혹은 신탁재산 감소비율 혹은 신탁이익 타인귀속비율

⑦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신청서 제출** (제3항)

◎ 신청서 제출자・수증받은 장애인

◎ 증여세 과세표준 자진신고납부계산서⊕증여재산명세서⊕신탁계약서

⑧ **장애인 사망후의 과세방법**

장애인에 대해 5억원까지의 수증신탁재산만 증여세 과세를 제외한다. 장애인이 사망하면 이러한 신탁재산은 당연히 장애인(사망자)의 상속인에게 상속되어 일반상속세가 과세된다. 장애인이 사망전에 이를 타인에 증여하면 자신의 증여세(수증자)와 받는 자의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본다.